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모의비행훈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7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2년 7개월 연장하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산림복지단지 구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림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지방산림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2명(8급, 연구사 1명), 국립수목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가숲길의 체계적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7

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국유재산 관리 업무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운영재산관리팀과 직급 상향 조정한 정원3명(5급 3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3명)을 폐지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에 디지털역량개발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4·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12. 교수실 운영·관리

제11조제4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11.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관리

제14조제2항 중 “기획운영팀”을 “운영재산관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기획운영팀장”을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321”을 “319”로, 일반직 계 “315”를 “313”으로, 행정사무

관 또는 임업사무관 “71”을 “70”으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4”를 “63”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33”을 “332”로, 일반직 계 “327”을 “32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2”를 “71”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5”를 “64”로,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8”을 “4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1”을 각각 “30”으로,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2”를 “1”로 한다.

별표 5의3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34”를 각각 “236”으로, 항공주사 “14”를 “16”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34”를 각각 “236”으로, 항공주사 “14”를 “1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37”을 각각 “729”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60”을 “158”로,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9”를 “118”로, 방송통신서기 “8”을 “7”로, 방송통신서기보 “12”를 “9”로, 운전서기보 “22”를 “21”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4”를 각각 “736”으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57”을 “155”로,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8”을 “117”로, 방송통신서기 “7”을 “6”으로, 방송통신서기보 “8”을 “5”로, 운전서기보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66”을 각각 “264”로, 4급 이하 “261”을 “2

59”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7”을 각각 “66”으로, 4급 이하 “66”을 “65”로 한다.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00”을 각각 “98”로, 5급 이하 “99”를 “97”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를 각각 “7”로,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2”를 “3”으로,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1”을 “2”로 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5년 1월 24일까지”를 “2027년 1월 24일까지”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운영재산관리팀은 각각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조정되는 정원을 포함한 별표 5의3의 정원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조정되는 정원을 포함한 별표 7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3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3] <신 설>

산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총계	30
일반직 계	3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5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5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4
공업서기보	1
운전서기보	2
방호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교수 담당)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산림교육원) ①·② (생략)	제11조(산림교육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7.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u>	<u><삭 제></u>
<u>7의2.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관리</u>	<u><삭 제></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10. 삭제	
<u><신 설></u>	<u>11.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u>
<u><신 설></u>	<u>12. 교수실 운영·관리</u>
④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6.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u>	<u><삭 제></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u>8. 교수실 운영·관리</u>	<u><삭 제></u>
9. 삭제	
<u><신 설></u>	<u>10.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u>

<신 설>

제14조(지방산림청) ① (생 략)

② 지방산림청에 기획운영팀,
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
를 두되, 팀장 및 각 과장은 과
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
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
다.

③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②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단서 신설>

③ ~ ⑪ (생 략)

제27조(한시정원) 「산림복지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구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11.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관리

제14조(지방산림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영재산관리
팀-----

-----.

③ 운영재산관리팀장-----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
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
3과 같다.

③ ~ ⑪ (현행과 같음)

<삭 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산림청의 기획운영팀은 2025년 2월 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기획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 분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조정되는 정원을 포함한 별표 7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은 2025년 2월 1일까지 존속하고, 2025년 2월 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3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5년 1월 24일까지 존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2027년 1월 24일-----.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산림청 정원에 관한 특례)</u>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u>제3조(국립산림과학원 정원에 관한 특례)</u>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을,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삭 제> <삭 제> <삭 제>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1</u>	<u>319</u>	-2
·	·	·	
·	·	·	
일반직 계	<u>315</u>	<u>313</u>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71</u>	<u>70</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4</u>	<u>63</u>	-1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33</u>	<u>332</u>	-1
·	·	·	
·	·	·	
일반직 계	<u>327</u>	<u>326</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72</u>	<u>71</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5</u>	<u>64</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48</u>	<u>49</u>	+1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산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1</u>	<u>30</u>	-1
일반직 계	<u>31</u>	<u>30</u>	-1
·	·	·	
·	·	·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u>2</u>	<u>1</u>	-1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34</u>	<u>236</u>	+2
일반직 계	<u>234</u>	<u>236</u>	+2
·	·	·	
·	·	·	
항공주사	<u>14</u>	<u>16</u>	+2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34</u>	<u>236</u>	+2
일반직 계	<u>234</u>	<u>236</u>	+2
·	·	·	
·	·	·	
항공주사	<u>14</u>	<u>16</u>	+2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37</u>	<u>729</u>	-8
일반직 계	<u>737</u>	<u>729</u>	-8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160</u>	<u>158</u>	-2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19</u>	<u>118</u>	-1
·	·	·	
·	·	·	
방송통신서기	<u>8</u>	<u>7</u>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12</u>	<u>9</u>	-3
운전서기보	<u>22</u>	<u>21</u>	-1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44</u>	<u>736</u>	-8
일반직 계	<u>744</u>	<u>736</u>	-8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157</u>	<u>155</u>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18</u>	<u>117</u>	-1
·	·	·	
·	·	·	
방송통신서기	<u>7</u>	<u>6</u>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u>8</u>	<u>5</u>	-3
운전서기보	<u>17</u>	<u>16</u>	-1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66</u>	<u>264</u>	-2
일반직 계	<u>266</u>	<u>264</u>	-2
·	·	·	
·	·	·	
4급 이하	<u>261</u>	<u>259</u>	-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립수목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u>	<u>66</u>	-1
일반직 계	<u>67</u>	<u>66</u>	-1
·	·	·	
4급 이하	<u>66</u>	<u>65</u>	-1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0</u>	<u>98</u>	-2
일반직 계	<u>100</u>	<u>98</u>	-2
·	·	·	
5급 이하	<u>99</u>	<u>97</u>	-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산림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u>	<u>7</u>	+2
일반직 계	<u>5</u>	<u>7</u>	+2
·	·	·	
·	·	·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u>2</u>	<u>3</u>	+1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u>1</u>	<u>2</u>	+1